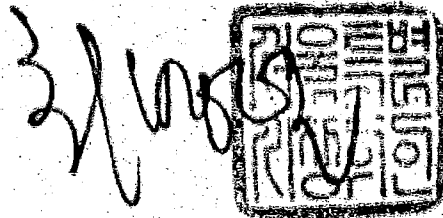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시 97

서울특별시장



199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용역업체가 용역준공시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등을 검토미흡한 상태에서 작성시 발생한 오류를 시정없이 납품함으로써 시공 또는 공사완료 이후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검토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건설기술심의시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등이 용역설계를 검토한 설계검토도서의 제출 의무화.(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수리계산서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등을 책임 기술자등이 설계도면 우측하단에 법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내용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검토도면 1부를 제출한다.

< 법 령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나. 설계도면의 검토 및 수정완료후 검토자와 검토입회자(발주관서의 용역감독)는 설계검토도면에 소속,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 별지 및 별지서식 [별표]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별지 및 별지서식 [별표]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p> <p>1.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 우측에 판권원 구조계산서·수리 계산서등을 부착하고 중·평면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등을 책임기술자등이 설계도면 우측하단에 밑테코 정한 색으로 검토내용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검토도면 1부를 제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 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60%;">검 토 내 용</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축 색</td> <td>적정 및 수정완료</td> <td></td> </tr> <tr> <td>청 색</td> <td>부적정</td> <td></td> </tr> <tr> <td>노란색</td> <td>재검토</td> <td></td> </tr> </tbody> </table> <p>나. 설계도면의 검토 및 수정완료후 검토자와 검토입회자(발주관서의 용역감독)는 설계검토 도면에 소속,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p> <p>2. 토목분야 (헌행과 같음)</p> <p>3. 건축분야 (헌행과 같음)</p>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축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란색	재검토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축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란색	재검토												
<p>1. 토목분야 (생략)</p> <p>2. 건축분야 (생략)</p>													

현행	개정
3. 기계설비분야 (생략)	4. 기계설비분야 (현행과 같음)
4. 전기설비분야 (생략)	5. 전기설비분야 (현행과 같음)
5. 조정분야 (생략)	6. 조정분야 (현행과 같음)
6.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 부수 (생략)	7.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부수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정